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35
----------	----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5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5개 기금 18,1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 [㉠]	2015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 = [㉠] + [㉣] - [㉤])	증감 [㉥] ([㉥] = [㉡] - [㉠])
		수입 [㉢]	지출 [㉣]		
합계(5건)	17,526,755	1,831,341	1,195,618	18,162,478	635,723
통합관리기금	8,201,114	198,700	197,553	8,202,261	1,147
사회복지기금	4,920,988	885,855	107,700	5,699,143	778,155
체육진흥기금	3,221,348	279,921	50,000	3,451,269	229,921
식품진흥기금	105,036	40,778	40,365	105,449	413
재난관리기금	1,078,269	426,087	800,000	704,356	△373,913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용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